

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2.19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9년 12월 20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2월 18일 (제170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(행자부 훈령 제9호) 이 폐지되고,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 기금운영조례를 제정, 공무원 교육훈련의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시상대상자 (안 제2조)
  -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교육훈련평가결과 성적우수자
  - 각 과정별 교육운영 유공자, 분임토의평가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
- 기금의 설치 · 집행 및 재원 (안 제4 · 5조)
  - 설치 :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 설치
  - 집행 :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 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  - 재원 :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
- 기금의 운용관리 (안 제6조) : 기금의 운용관리는 교육원장이 관리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동윤)

- 행자부 훈령이 폐지되고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필요한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

#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게 시상(이하“교육상”이라 한다)하기 위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(이하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고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상대상자)** 교육상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성적우수자 :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교육 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2주이상이고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
2. 교육운영유공자 : 각 과정별 교육생자치회의 임원
3. 우수분임 : 분임토의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

**제3조(시상시기 및 시상금·품 등)** ①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.

- ②성적우수자는 별표1에서 정한 서식의 상장 및 별표2의 기준에의한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한다.
- ③교육운영유공자와 우수분임의 시상금·품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교육원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금의 설치)** 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

-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“171백만원”으로 한다.
- ③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조(기금의 재원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대통령 특별지원금

2.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

3. 기타 수입

제6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교육원장이 운영·관리한다.

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③기금관리는 세이·세출외현금 「공무원교육시장기금」 구좌로 한다.

④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, 지급명부,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교육원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·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
3.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교육상 운영위원회) ①교육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교육원 간부직원중에서 임명한다.

③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

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%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0조(감독) 도지사는 교육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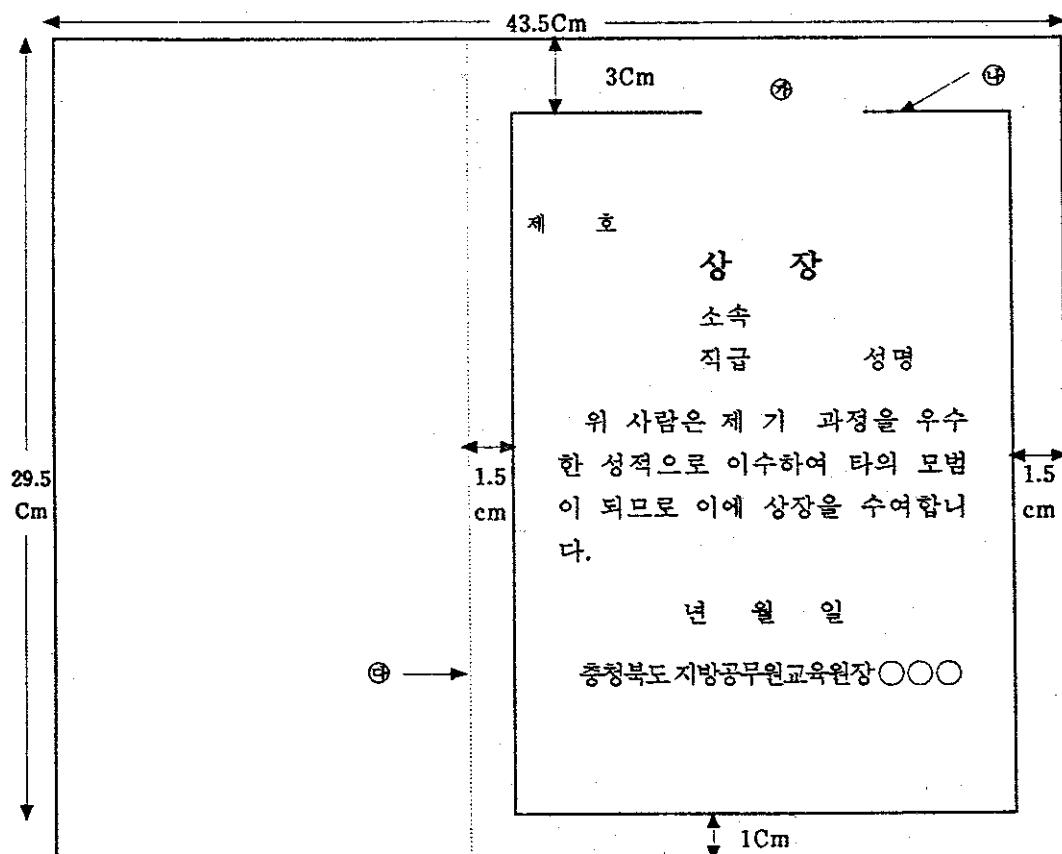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상장문안 및 규격



- 1) 상장의 지면도색은 백색으로 한다.
- 2) '가'에는 충청북도 「마크」를 인쇄한다.
- 3) '나'의 테두리선은 금박으로 한다.
- 4) '다'의 중간선은 선을 표시하지 않고 접을 수 있도록 한다.

## [별표 2]

교 육 과 정	시 상 금 액
교육인원 50명 이하과정	1 등 : 15만원 2 등 : 10만원
교육인원 50명 초과과정	1 등 : 20만원 2 등 : 15만원 3 등 : 10만원